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 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가. 위반행위 : 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나. 조치기준 : 차기 교육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 ② ③항은 10만원의 과태료, 위반사항 ④항의 ㉠는 100만원의 과태료  
㉡는 10만원의 과태료

라. 관계서류 : 해당교육 수료증

## 2. 방호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을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3조 제1항)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 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나. **부과금액**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벌금) 부과

### 3.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없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대여받아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제2항)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후 수사에 착수(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대여한 자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4.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 검정 미실시(법 제33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 또는 수입을 중지하고 검정기관 등을 안내하여 검정을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응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다. **관계서류** : 성능검정합격증

### 5.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방호장치와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3조 제7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6.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의 수거·파기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33조제8항)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7.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수입을 중지시키고 검사기관 등을 안내하여 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하되,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다. 관계서류 : 검사합격증

### 8.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지】

<input type="checkbox"/> 설계	<b>검 사 합 격 증</b>		
<input type="checkbox"/> 성능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산계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인화: )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합격번호			
⑦ 검사대상품	⑧ 용량		
⑨ 형식번호	⑩ 제조자명 (국가명)		
합격사연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input type="checkbox"/> 설계검사 <input type="checkbox"/> 성능검사 합격증을 교부합니다.			
검사기관의장 ⑪			

210mm x 297mm 표준용지(1종) 120g

가. 위반행위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1대당)

- ① 크레인(천장·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외)
- ② 그 밖의 검사대상 기계·기구

나.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 및 검사기관 등을 안내하여 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조치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100만원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30만원의 과태료

라. 관계서류 : 검사결과 통지서

## 9.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기계·기구·설비와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설비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법 제34조 제 7항)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조치기준 : 즉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진열 등의 금지 또는 중지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단,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의 수거·파기명령에 불응한 경우(법 제34조제8항)

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제공 :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